

인도주의법과 인권

주(註)

이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별도를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인도주의법과 인권」

Contents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	7
국제인도주의법이란 무엇인가?	16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

유사점과 차이점

국제인도주의법(IHL)과 국제인권법(IHRL)은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개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체계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법의 일부 조항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두 법 모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문 또는 잔인한 대우를 금지하며, 형사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여성과 이동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식량과 건강에 관한 권리들을 규정한다. 한편, 국제인도주의법은 교전 행위, 전투원과 전쟁포로들의 지위, 적십자와 적신월사 엠블렘의 보호와 같은 국제인권법 영역 외의 많은 문제들을 다룬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 투표, 그리고 과업을 할 권리 등 국제인도주의법이 규제하지 않는 평화시의 문제들을 다룬다.

국제인도주의법이란?

국제인도주의법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또는 관습에 의해 규정된 일단의 국제규약으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무력충돌로 현재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며, 교전 당사자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투 방법과 수단에 대한 권리들을 제한한다.

국제적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주의법의 모태는 1949년 채택된 4개 제네바 협약들과 1977년 채택된 추가의정서 I이다. 비국제적 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주의법의 모태는 4개 제네바 협약들이 공통적으로 제 3조로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1977년 채택된 추가의정서 II이다.

국제인권법이란?

국제인권법은 조약 또는 관습에 의해 규정된 일단의 국제규약으로 개인과 집단들이 이 법을 근거로 정부에 일정한 행위 또는 혜택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조약의 체결에 바탕을 두지 않는 수많은 원칙과 지침들 (“연성법: soft law”) 역시 국제인권규약에 해당된다.

국제인권법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조약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집단학살에 관한 국제협약 (1948),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1965), 여성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1979),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198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 등이 있다. 주요 지역별 인권 조약으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1950),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 (1948), 미주 인권협약 (1969),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1981)이 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그 역사적 기원은 서로 다르지만, 최근 체결된 조약들은 이 두 가지 법체계의 규정들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한 예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이 협약에 부속된 아동의 전쟁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이 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언제 적용되나?

국제인도주의법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에 적용된다. 국제적 무력충돌이란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전쟁이나 자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해방 전쟁들을 말하며, 전쟁선포의 유무 또는 교전국들이 전시상태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란 정부군과 무장반군 간의 교전, 또는 반란집단들 간의 교전을 말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특수한 상황, 즉 전쟁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원칙적으로 항상 적용된다. 다시 말해, 평화시와 전시 모두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국제인권법 조약들은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는 정부가 일부 인권들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권의 제한은 당연한 위기상황에 합당해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국제인도주의법을 비롯한 다른 국제법의 규정들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인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그러한 인권으로는 생명권,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역과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소급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누구에게 구속력을 갖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모든 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적 전쟁의 경우에는 교전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며, 비국제적 전쟁의 경우에는 정부 및 정부와 교전하는 무장반군, 또는 다른 무장집단들과 교전하는 무장집단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인도주의법은 교전 중인 국가와 비국가 무장집단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제인권법은 정부와 개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비국가단체들, 특히 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집단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에게도 구속력을 갖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 협약 및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 I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기타 전쟁에

관한 법과 관습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이러한 행위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기구들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면, 개인들 역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인권법 조약들은 개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인권법은 집단 학살,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 고문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도 국제적 재판권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국제형사법정도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는다.

보호 대상은?

국제인도주의법은 교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제네바 협약들은 육상에 있는 부상병들이나 질병에 걸린 군인들에 대한 대우 (협약 I), 해상에 있는 부상자, 부상병 또는 난파병들에 대한 대우 (협약 II),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협약 III),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대우 (협약 IV) 등을 규정한다. 민간인에는 국내 피난민, 여성, 아동,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언론인, 그리고 기타 범주의 개인들이 포함된다 (협약 IV와 의정서 I)

이와 마찬가지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규약들(4개 제네바협약 공통인 제 3조와 의정서 II)은 교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교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우를 규정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투 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 민간인들 역시 보호한다. 예를 들면, 교전 당사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며, 군사적 목표물과 비군사적 목표물들을 구분해야 한다. 민간인 전체 또는 민간인 개인을 공격 목표로 삼아서는 안되며, 민간인 또는 민간 목표물에 과도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금지된다.

국제인권법은 평화시를 위주로 규정된 법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국가적 차원의 이행 체계는?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의 이행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있다.

국가는 평화시와 무력충돌시 모두 국제인도주의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실제적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 * 국제인도주의법 관련 조약들을 번역해야 한다.
- * 전쟁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 * 적십자와 적신월사 엠블럼을 보호해야 한다.
- * 기본적 권리 및 사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국제인도주의법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 * 국제인도주의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훈련하고, 군에 법률 고문들을 임명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에는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들도 들어 있다. 국가는 조약들이 규정하는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인권법 조약들이 금지하는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형법을 제정하거나, 특정 인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서 구제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이행 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행에 대해서는, 4개 제네바 협약이 공통적으로 제 1조로 채택하고 있는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는 모든 상황에서 제네바 협약들을 준수하고, 준수를 보장해야 할 집단적 책임을 진다. 국제인권법의 감시체제는 이익보호국 (Protecting Power) 제도, 조사절차, 그리고 의정서 I의 90조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진상조사위원회 (International Fact-Finding Commission)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서 I의 회원국들은 의정서 I 또는 제네바 협약들이 심각하게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엔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는 제네바 협약들과 동 협약들의 추가의 정서들,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 법령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에 의거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체계의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인도주의법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며, 국제인도주의법의 증진과 발전에 힘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니셔티브의 권한을 행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제인도주의법의 성실한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감독 체계는 유엔헌장 또는 주요 국제인도주의법 조약들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로 구성된다. 유엔헌장에 의거해 설립된 중심 기구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이 기구의 부속기구인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분과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주제별 또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권상황에 관한 감시와 보고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실무 그룹 등에 관한 “특별절차들”을 수립 해 왔다.

주요 국제인도주의법 조약들 중 6개 조약에서는 이 법의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판무관실은 유엔인권기구들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유엔 체제 전반에 걸친 인권활동과 협력을 확대하며, 인권을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역량을 증대하고, 인권 자료와 정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적 차원의 이행 체계는?

국제인도주의법이 국제인권법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지역별 주요 인권조약들에 의거해 설립된 지역 인권재판소들과 위원회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의 이행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별 인권기구들이 국제인권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1950년 체결된 유럽 협약에 의거한 유럽의 인권보호체계의 핵심은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아메리카의 주요 지역별 인권감시기구는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이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1981년 아프리카헌장에 의거해 설립된 인권감시기구이다. 아프리카인권재판소를 규정하는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2003년 1월

국제인도주의법이란 무엇인가?

국제인도주의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란?

국제인도주의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력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일단의 규약을 말한다. 이 법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있거나, 이제 더 이상 가담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법(law of war) 혹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도 불린다.

국제인도주의법은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일단의 규칙인 국제법의 일부이다. 국제법은 조약 또는 협약과 같은 국가들 간의 합의, 각국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국가 관행들로 구성되는 관습적 규칙, 그리고 일반원칙들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이 법은 어떠한 국가가 실제 무력을 사용하느냐를 규제하지 않는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제법상의 중요한 특정규칙이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모든 전쟁에 일정한 원칙과 관습이 적용되었던 고대 문명과 종교의 규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이 세계적 차원에서 성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였다. 그 이후, 각국은 현대전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일련의 실제적인 규약들에 합의를 해 왔다. 이러한 규칙 들은 인도주의적 관심과 각국의 군사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국제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가입국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규칙 들이 발전을 거듭했다. 오늘날, 국제인도주의법은 국제법을 형성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국제인도주의법의 골격은 4개의 1949 제네바 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들에 가입했다. 이 협약들은 그 이후 2개의 추가 협정, 즉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에 관한 1977년 추가 의정서들에 의해 발전되고 보완되었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합의들은 특정 무기와 전술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범주의 사람들과 재화를 보호한다.

- *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과 2개 의정서
- *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 * 1980년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과 5개 의정서

- *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
- * 1997년 오타와 대인지뢰 금지 협약
- * 2000년 아동의 무력충돌 개입에 대한 아동의 권리 협약과 관련한 선택적 의정서

국제인도주의법의 많은 조항들이 이제 관습법(customary law)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이제 국제인도주의법은 모든 국가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일반원칙들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언제 적용하나?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충돌에만 적용되고, 상호 연관성이 없는 개별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 긴장 상태 또는 소요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무력충돌이 발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누가 교전을 시작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교전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구별한다. 국제적 무력충돌이란 최소 2개 이상의 국가들이 교전에 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전쟁은 4개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 I의 규정들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규약들의 적용을 받는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란 정규군이 무장 반란세력들의 무장집단들과 교전하는 사태, 또는 무장집단들이 서로 교전하는 사태 등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전시 상태를 말한다. 비국제적 전쟁에는 보다 협소한 범위의 규칙들이 적용되며, 이 규칙들은 4개 제네

바 협약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제 3조로 채택하고 있는 조항과 추가 의정서 II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두 법의 일부 규칙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서로 다른 조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인권법은 국제인도주의법과는 달리, 평화시에 적용되며, 많은 조항들이 무장충돌 발발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적용 대상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역에 적용된다.

- * 교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보호
- * 특히, 무기를 비롯한 전투 수단, 그리고 전술 등의 전투방법에 관한 규제.

보호란 의미는?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 군대의 의료 및 종교적 전투요원 등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한다. 또, 부상자, 난파를 당한 자, 환자, 전쟁 포로 등 이전에는 참전했으나 지금은 참전하고 있지 않은 전투 요원들도 보호의 대상이다.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항할 의사를 밝혔거나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적을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환자 또는 부상자는 이들을 접수한 측에 의해 수습되고 치료되어야 한다. 의료 요원 및 보급품, 병원, 그리고 앰블런스들은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전쟁포로의 수용 환경과 적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다. 여기에는 식량, 피난처, 그리고 의료의 제공, 가족과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 장소, 물체들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표식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 중 대표적인 표식으로는 적십자, 적신월사, 문화재와 민방위시설임을 표시하는 표식 등이 있다.

무기와 전술에 관한 규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국제인도주의법은 다음과 같은 전쟁 수단과 방법들을 모두 금지한다.

- * 전투에 직접 가담하는 자들과 민간인을 비롯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이는 민간인 집단, 민간인 개인, 그리고 민간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
- * 심각하고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따라서 국제인도주의법은 유산탄, 화학 및 생물 무기, 광학무기, 대인지뢰 등 많은 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이 실제로 준수되는가?

안타깝게도,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인들이 전쟁에 희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이 민간인, 전쟁포로, 환자와 부상자를 보호하고, 야만적 무기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경우도 많다.

이 법이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국제인도주의법의 실질적인 준수는 아직도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제인도주의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각국은 군대와 일반 대중에게 이 법의 규정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각국은 이 법의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법률을 제정하여 제네바 협약들과 추가 의정서들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들을 전쟁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또, 적십자와 적신월사의 엠블럼을 보호하는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들도 취해졌다. 최근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자행된 전쟁범죄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범재판소들이 설치되었다. 전쟁범죄의 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1998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의해 설치되었다.

우리 모두는 개인 자격으로나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2004년 7월



「인도주의법과 인권」

|인쇄일| 2005년 11월 일
|발행일| 2005년 11월 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02 2125 9660~5
|F A X| 02 2125 9666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02)313-7593(代)

ISBN: 89-90475-81-3 94300 비매품